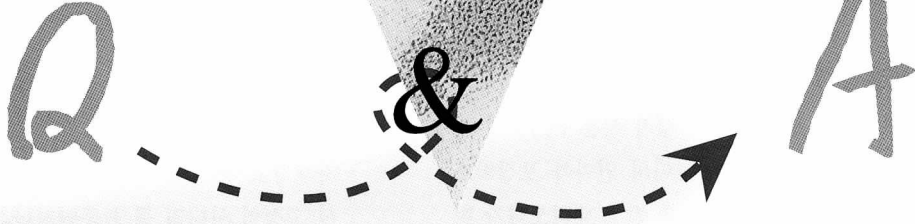


## 산업안전



창고업을 하고 있는 회사로서 전국에 여러 사업장이 있고 한 사업장의 자사직원이 60~80명 정도 되고 도급직원이 30~40명 정도 되며 도급직원들은 도급회사에서 관리자를 파견하여 직접 업무를 지시하고 관리하는 형태의 완전 도급 형태입니다. 각 사업장에서는 안전관리와 보건관리를 대행기관에 계약하여 진행중이나, 대행기관과의 계약시 도급근로자를 같이 계약해야 하는지 여부를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1. 도급업체가 50인 미만이라 안전관리자 선임 및 대행기관과의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경우 자사는 도급근로자를 포함하여 대행기관과 계약을 해야하는지요.
2. 도급업체가 50인 미만이라 안전관리자 선임 및 대행기관과의 계약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자사의 관리차원에서 도급회사에 독립적으로 대행하도록 권유하거나 강요하여 자사가 대행계약시 도급근로자에 대한 인원을 제외후 계약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같은 법 제16조에 의거 창고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있으며, 귀 질의에서처럼 자사직원이 60~80명 정도되고 하도급업체 직원이 30~40명인 경우라면 하도급업체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선임 의무가 없으므로 원도급인인 귀사에서 하도급업체의 상시근로자를 포함하여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귀 질의 2와 같이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대행하도록 권유하거나 강요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동 하도급업체 근로자를 제외한 인원에 대해서만 안전 및 보건관리 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법 상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2 제2항 제1호 내지 제10호에 의하면 명예감독관의 업무의 범위와 제4항에는 노동부장관은 명예감독관의 활동지원을 위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 회사의 경우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교대 근무자로서 산업재해예방활동 참여 및 활동시 근태조치 또는 시간외 근무수당 요구(노동조합)문제가 있어 법적 해석을 명확히 답변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자기 근무 시간내에 산업재해예방활동 등을 통해 잠재 위험요소를 발견하여 시설개선 조치 요구 등 자율안전보건활동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명예감독관 활동비를 노동부에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를 들면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노사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명예산업감독관이 입회해야하는데 명예감독관의 근무가 당일 근무날이라면 근태조치를 해야하고, 쉬는 날에 회사에 출근하여 안전점검 및 재해예방활동을 했다면 활동한 시간만큼 회사측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문제는 2/4분기 산업안전보건회의에서 노사간 많은 진통을 겪었으며, 단체협약 갱신시도 상기 질의건에 대한 검토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회사측에서 노동조합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일근자로 교체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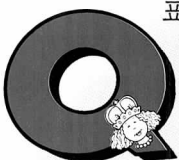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45조의 2 제2항에 의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범위, 활동시간 등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시 노사간 협의를 거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명기하여야 하는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내용을 고려할 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시간의 근무수당 문제, 일근자 또는 교대자 추천문제 등은 사업장 특성을 고려하여 노사간 자율적인 협의를 거쳐 안전보건관리규정 등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45조의2 제4항에 의거 노동부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규정된 임의 규정이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사업장내에서 산재예방활동 업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의 의미는 아닙니다. 참고로 노동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45조의2 제2항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노동부 예규 제444호)에 의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협의회(반기) 개최시 참석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한하여 일정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Q** 현관 출입구 및 리프트카 방호 선반으로 합판을 사용 할 경우 또는 유공발판을 사용 할 경우 자재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만약 사용한다면 자재 손료를 몇%까지 사용 가능한지요?

현관출입구 및 리프트카 주변의 방호선반은 낙하물 방지시설로 이에 사용되는 재료(합판, 유공발판 등)는 산업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하며 자재손료를 몇%까지 사용하는 가에 대하여는 정해진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안전시설로 사용한 때의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하면 되고 사용종료 후 재사용할 경우의 평가된 금액은 여입하면 될 것이고, 재사용하는 현장에서는 여입한 금액만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하면 됩니다. 다만 자재비를 이중으로 계상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Q** 표준안전보건관리비로 안전시설비 인건비를 정산할 경우 실제로 사용한 실투입인건비, 공사계약 내역서상의 인건비, 건설품셈에 의한 공수 및 대한건설협회 발표 시중노임 중 어느 것으로 정산가능한지,

본 현장의 공사금액이 약 70억원 정도인데,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금액에 해당되지 않아 기술지도를 받고 있는데 공사사방서 및 감리단의 요구에 의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른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기술지도에 따른 기술지도비를 같이 계상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감리단측에서는 안전관리비와 기술지도비를 동시 계상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1. 표준안전관리비보건중 안전시설비 인건비는 현장에서 안전시설을 하는 실제투입한 인원에 대하여 정산이 가능하며(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별표2)중 안전시설비등 항목)
2. 안전관리자 인건비와 기술지도비용을 안전관리비에서 같이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지방노동관서에 선임보고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업무수행 출장비등을 안전관리비에서 계상할 수 있고(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1)또한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는 동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7에 해당하므로 동시에 위 2가지 사항을 계상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